

문서번호	문화체육과-29870
결재일자	2015.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관광담당	문화체육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지은	이명근	장순봉	代민지선	김병환	10/26 김영배
협 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의회협력담당 홍지현				

- 민족정신과 역사인식 재조명을 위한 -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설립계획

---

2015.10



**성 북 구**  
**(문화체육과)**

- 민족정신과 역사인식 재조명을 위한 -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설립계획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잃은자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압박을 당하는 사람의 주위는 무덤으로 바뀌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위는 지옥이 되는 것이니,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터럭처럼 여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달게 받는 것이다.”

〈만해 한용운이 옥중에서 지은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중에서〉

###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및 제153조(협의회회의 조직)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정신을 되새기며
  -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선조들과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역사교육의 부재
- 자유와 평화의 독립정신의 재발견
  - 만해 한용운 선사의 의식 속에 투영된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은 현시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므로
    - ⇒ 만해 한용운의 독립정신의 재조명은 자라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민족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 제공

## □ 역사인물 재조명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 최근 중앙정부의 역사문화정책 확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역사인물 탐구 및 재발견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 지역적 공감대와 역사인물의 재조명을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하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이 절실함

☞ 만해 한용운 선사의 선양사업을 통해 민족정신의 재조명, 특히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재발견과 역사교육으로 자유와 평등의 시대정신 고취로 민족과 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조성  
⇒ 지역과 역사를 초월하는 국가 통합의 원동력

## 3 협의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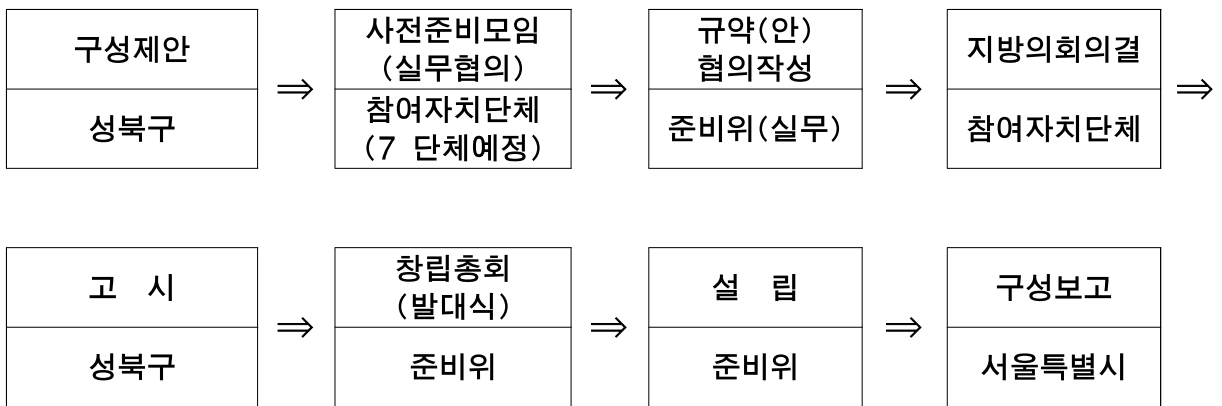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방안을 모색
- 지자체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협의회를 통해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 조성  
⇒ 협의회에서 선양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화 공동추진
- 만해 한용운의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을 세대를 넘어 범국민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협의회 역할 증대  
⇒ 만해 한용운 순례길, 만해축전 기념사업 등을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관광자원화 콘텐츠 개발 추진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협의회 차원에서 협력방안 모색  
⇒ 예)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성북구 심우장(입적)에 만해 한용운 기념공원 및 문학·도서관 건립  
| 만해 한용운 유적지 순례길 운영(만해 한용운 순례길 관광상품화 코스개발)  
| 학술세미나, 정책 포럼, 만해축전, 흥성인물축제 등
- 협의회 자치단체간 우수한 정책·제도의 벤치마킹 및 협업강화

## 4 협의회 구성계획(안)

### □ 구성제안

- 조직형태 : 지방자치법 제 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로 구성
- 제안사유 : 조직체 기능 및 성격에 행정협의회 형태가 가장 부합됨
  -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 ☞ 지방의회의 의결 → 고시 → 광역자치단체에 구성 보고
  - | (행정협의회) 의제 채택이 광범위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은 부족하나, 결정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부담이 가능
    - ⇒ 역사적인 사실 재발견, 상호 자치단체간 공동사업에 대한 연계추진,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우수한 정책·제도의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부담금(국비·지방비) 공동분담과 공무원 활용이 가능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로 구성함이 타당함

### □ 구성절차(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 ■ 참여 자치단체 수(예정) : 7개 단체

- ▶ 서울(4) :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 ▶ 강원도(2) : 인제군, 속초시
- ▶ 충청도(1) : 홍성군

※ 자치단체별 만해 한용운 연관사항 별첨

## □ 협의회 구성방향

-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
-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대표자 1인을 두어야 함으로 수석대표(회장) 선임
- 협의회 사무의 책임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원 중 1인을 사무총장으로 선임
- 협의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지자체 해당 부서장) 설치

## □ 협의회 주요 기능

- 한국사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선양사업 공동 추진
- 협의회 자치단체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만해 한용운 유적지 전국적 순례를 통해 민족정신 및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상호 노력
- 만해 한용운 선사의 자료발굴, 역사콘텐츠 개발 및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
- 자치단체별 다양한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

## □ 그 동안 추진경과

- 2015. 2.26 ----- 만해 한용운 선생의 출생·출가·입적의 역사를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성북구청장 검토지시)
- 2015. 4. 7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관련 양기관 업무협약 체결 협의 (성북구 ⇄ 인제군 ⇄ 홍성군)
- 2015. 5. 20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 성북구 ⇄ 충남 홍성군 ⇄ 강원도 인제군)
- 2015. 8.12~8.13 : 만해 한용운 유적지 순례길 운영(4개시군구 참여) (성북구 심우장 ⇒ 홍성군 만해생가지 ⇒ 인제군 만해마을⇒ 속초시 신흥사)
- 2015. 8.13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설립 제안 (성북구청장 ⇒ 홍성군수 · 인제군수)
- 2015. 8.10~8.29 : 광복 70주년 기념 만해 한용운 특별전시회

## 5 공동 협력사업 추진계획(안)

구 분	추진 시기	세 부 사 업 명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설립제안	2015. 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설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에 따른 제안(9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해 한용운 관련 7개 지자체(참여 예정)</li> </ul> </li> <li>• 협의회 준비회의(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위 구성(성북구·흥성·인제군·속초시 실무단)</li> </ul> </li> <li>• 업무협약 체결 및 협의회 창립총회(11월~'16.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지자체 및 해당지역 교육청(교육장)</li> </ul> </li> </ul> </li> </ul>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작성	2015.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준비회의 시(10월) 참여지자체 의견 수렴</li> </ul> </li> </ul>
협의회 설립을 통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분위기 확산	2016. 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자치단체 간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간 상호 방문(자율 참여)</li> <li>• 만해 한용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 포럼</li> <li>• 만해 한용운 학술 세미나, 문화행사 참여</li> </ul> </li> <li>▶ 만해 한용운 유적지 순례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국토대장정 일환으로)</li> <li>• 일반 구민 대상 시범 운영 등</li> </ul> </li> </ul>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국시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회의	2016.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자치단체별 선양사업 국시도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해 한용운 기념공원 및 문학관 건립</li> <li>• 만해 한용운 유적지 순례길 운영</li> <li>• 만해 한용운관련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 제작(예 심우공연) 등 콘텐츠 개발</li> <li>• 만해 다례제, 탄신기념일, 만해 문학축전 등</li> </ul> </li> </ul>

지자체명		지자체별 관련 내용	관련 장소	만해관련 행사
서울시	종로구	(1918) 월간지 『유심』을 창간하여 편집 겸 발행인으로 취임 (1919) 태화관에서 민족대표로 독립선언 연설 (1923) 민립대학 설립 운동 지원 강연에서 '지조'라는 연제로 강연 (1926) 선학원에서 6·10만세운동 예비검속으로 구속 (1970) 탑골공원에 『용운당 대선사비』 건립	 선학원	만다레해 한용운 추모제(선 학 원, 국가보훈처)/ 윤동주 시인 문학 돌레길
	서대문구	(1919) 3.1운동시 수감, 서대문감옥에서 일본 검사의 심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를 기초하여 제출	 서대문형무소	독립민주축제, 삼일절기념행사
	성북구	(1933) 박광, 방응모 등의 도움으로 심우장 건립 (1937) 광복운동의 선구자 일송 김동삼의 유해를 심우장에 모셔 장례를 지냄 (1944) 심우장에서 입적	 심우장	만해 한용운 추모다례제 (6.29)
	중구	(1906)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전국만해백일장
충청도	홍성군	(1879) 충남 홍주(현재 홍성군)에서 출생	 만해생가지	만해 한용운 다례제 (8.29), 역사인물축제
강원도	인제군	(1905) 백담사 전영제 스승에게 수계 (1917) 오세암에서 좌선하던 중 바람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진리를 깨치고, [오도송] 남김 (1925) 오세암에서 『심현담주해』 및 『님의 침묵』 탈고	 백담사	만해축전, 만해대상시상식
	속초시	(1921) 신흥사 승려로 원적을 둔	 신흥사	

**제1조(목적)**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로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1.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에 관한 사항
2.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만해 한용운 순례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사업의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5. 만해 한용운 관련 학술세미나, 정책포럼에 관한 사항
6. 만해축전·역사인물축제·다례재 등 문화행사 협력에 관한 사항
7. 만해 한용운 기념공원 및 문학관 건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 만해 한용운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관련 국장이 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만해 한용운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

**제9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회비)** ① 협의회는 재원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 2,000,000원과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③ 협의회 발전에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출)** 회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제출한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제14조(회계)** ①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간사가 속한 시군구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협의회 회비집행 상황은 회계결산감사를 거쳐 매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5조(기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